제5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3. 3. 15.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3년 3월 15일 14:00 ~ 14:50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주 현 위원장 김 김 영 위 원 소 대 영 권 위 원 용 재 김 위 원 **o**] 복 현 위 원 유 재 훈 위 원 (의결 제49~62호) 원 **o**] 승 헌 위 김 용 진 위 원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 1) 2023년도 제4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2023년도 제5차 금융 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보고
- □ 2023년도 제4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2023년도 제5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 2) 의결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48호 **『예금보험공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예금자보호법」제23조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에 의거 예금보험공사 2022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 내용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 의결안건 제49호 『(거제)장목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거제)장목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50호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집합투자 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및 투자매매· 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51호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을 조건부 승인하는 내용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 같은 종류의 증권 발행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각 49인 이하에게 청약권유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공모규제를 회피한 발행인과 주선인을 제재하는 내용
 - (위원) 위원님들, 증선위와 안건 소위의 수정안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52호 안건과 관련하여, ○○ ○○○○㈜ 및 □□□□□□□□㈜에 대한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겠음. 증선위와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는 조치대상자들의 공시의무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기타 부분은 조치원안대로 심의하였으나, 사실상 동일한 DLS를 발행인을 달리하여 모집·판매한 본 사건 위반사항 ⑤의 경우, 증권의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동일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당시 ('19.3.~'19.9.)에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21.2.) 전으로 업계의 인식이 불명확하여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반행위 동기를 '고의'에서 '중과실'로 조정하여 심의하였음. 이에 따라 ○○○○○㈜에 대하여 8억 6,030만원, □□□□□(㈜에 대하여 9억 1,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겠음.

ㅇ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 의결안건 제53호 **『공인회계사** ○○○에 대한 징계의결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직무일부정지를 부과하는 내용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54호 『○○○○○㈜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외부감사법 제5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공시한 회사관계자 및 감사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워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55호 『㈜레드로버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외부감사법 제5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공시한 회사관계자 및 감사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56호 『㈜○○○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 과징금 부과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외부감사법 제5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공시한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57호 『㈜○○○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외부감사법 제5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공시한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58호 『더노던트러스트컴퍼니 서울지점 폐쇄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외국계 은행인 더노던트러스트컴퍼니의 서울지점 폐쇄를 인가하는 내용
 - (위원) 더노던트러스트컴퍼니의 서울지점 폐쇄는 우리나라의 규제 등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이 약화되어 나가는 것임을 외부에 잘 설명할 필요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워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59호 『신한이지손해보험㈜의 권리, 해상, 기술 보험 종목에 대한 보험업 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손해보험업을 旣 영위 중인 신한이지손해보험㈜에 대해 권리· 해상·기술보험 종목의 추가를 허가하는 내용
 - (위원) 자본시장법에 비추어 봐서 허가 단위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 지금 현재는 신한이지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을 하다가 권리·해상·기술보험 종목을 반영을 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작은 단위로 혹시 보험이 만들어 질 수 있지 않을지? 그리고 자동차보험이나 권리·해상·기술보험 전체 각각이 특정한 물적, 자본적 또는 기술적 특징을 요구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만약 필요하면, 우리는 지금 단기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높이려면 보험도 자본시장처럼 그렇게 분리하고 작게 만들어서 허가를 할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논의들이 있었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
 - ㅇ (위원) 여러 가지 다 검토하고 있으니까 스몰라이선스 차원에서

- 이 건도 한번 보시기 바람.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60호『디지비생명보험㈜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 제61호『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적기시정 조치 유예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디지비생명보험㈜ 및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해 적기시정 조치를 유예하는 내용
 - (위원) 이 건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임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특히 이익이 났을 것으로 봐서 성과급을 받아갔을 것으로 보임. 그래서 이연성과급에 대해서 환수(Clawback)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었나 저희가 금감원에 챙겨볼 것을 요청했고, 실무적으로 요청을 받으니까 이연성과급을 회수 받을 근거는 없으나 자진반납하는 것으로 금감원이 조치한 것으로 들었음. 지금 이 성과급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이 많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 스스로 이런 부분을 하는 노력은 필요한 것 같고,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case)를 금감원이 잘 챙겼다고 생각하고 있음.

-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62호 『코리안리재보험㈜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코리안리재보험㈜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위반 4건에 대해 과태료 1억 6,000만 원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 (위원) 이 건은 금감원이 지적한 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나, 예수금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책임준비금으로 할 것이냐, 양쪽 다 부채계정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단순한 계정착오로 볼 여지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이 건은 지금 금감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RBC를 악용하는 차원이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보험회사에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음. 실제적인 위험이 없는 것이라면 단순한 계정착오는 회사에 유리한 형태로 제재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임.
 - (위원) 적절하게 공감이 가는 지적을 해 주셨음. 다만, 이 관련 제도들이 바뀌게 되는 점도 있고 또 관련 규정도 개정안 등이 진행 중임. 차후에는 이런 류의 건들은 흔히 발생하기 어려운

건이라서 이번 건에 한해서 이런 특정한 사정을 봐서 결정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음.

-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도 가장 최소한으로 착오에 준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3년도 금융위원회 제5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4시 50분 폐회)